

식품접객업자·집단급식소·통신판매업자



식품접객업·위탁급식영업자·집단급식소·통신판매업자 축산물 이력표시 이렇게 합니다.

* 관련법률: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
식품접객업·집단급식소 준수사항

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(법 제18조제4항, 시행령 제6조, 시행규칙 제21조)

- ▣ (표시대상) ① 영업장 면적 700㎡ 이상 일반·휴게음식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*을 조리·판매하려는 경우
②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*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

* 이력관리대상축산물(부산물 제외): (국내산)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

- ▣ (표시기한) 축산물 판매·제공 시부터 소진 시 까지

*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모두 게시(음식으로 판매·제공 시 게시 가능)

- ▣ (표시방법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

- ①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
- ② 인터넷 홈페이지(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)
- ③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
- ④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
- ⑤ 별도 게시판 또는 팸말
- ⑥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(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6조제2항)

※ ③~⑥의 경우에는 계산대, 출입문 주변,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중 한 곳 이상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

- ▣ (주의사항)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함

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보관 (법 제26조제4항)

- 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*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

* 식육의 종류·원산지·등급·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
(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1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)



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

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(법 제18조제4항, 시행령 제6조, 시행규칙 제21조)

- ▶ **(표시대상)** ⑪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*을 판매하려는 경우

* 이력관리대상축산물(부산물 제외): (국내산)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계란(가정용)

- ▶ **(표시방법)**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‘이력번호 표시 제품임’을 고지하고 배송상품에 해당 이력번호 표시

-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(인터넷, TV, 잡지 등):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,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‘이력번호 표시 제품임’을 표시
 - 표시시기**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
 - 표시문구** 예) ‘이력번호 표시제품임’, ‘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’
-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(전화 등):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
 - 설명방법**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, 반복적(1회당 2번 이상)으로 설명
 - 설명문구** 예시) ‘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,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.’

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보관 (법 제26조제4항)

- ▶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*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

* 식육의 종류·원산지·등급·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
(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1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)

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(법 제34조, 시행령 제16조)

- ▶ 영업장 단위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기준



위반행위 내용	근거 법조문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	
		1차	2차	3차	4차 이상
포장처리 및 거래·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16호	70	140	280	500
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17호	70	140	280	500
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18호	70	140	280	500
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19호	100	200	400	500
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,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20호	100	200	400	500
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21호	50	100	200	400

